

제322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21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 유대운 · 홍종학 · 민홍철 · 양승조 · 강기윤 · 이상민 · 김제남 · 배기운 · 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7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채익 · 김영록 · 고희선 · 정희수 · 이철우 · 송영근 · 이만우 · 신의진 · 최봉홍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7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7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김영록 · 김춘진 · 노철래 · 박수현 · 김우남 · 이현재 · 김종태 · 윤재옥 · 이완구 의원 발의)(계속) 7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1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7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7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7
1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7
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8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

홍 · 유승우 · 서용교 · 주영순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8
20.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윤명희 · 김기선 · 서용교 · 나성린 · 주영순 · 박대동 · 남경필 · 민현주 · 전하진 · 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8
21.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이낙연 · 유승우 · 서용교 · 김정록 · 박대동 · 이만우 · 정우택 · 박인숙 · 류지영 · 최봉홍 · 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8
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 서영교 · 김춘진 · 김영록 · 배기운 · 진성준 · 윤관석 · 조정식 · 주승용 · 우윤근 · 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8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8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신성범 · 이장우 · 윤재옥 · 김장실 · 박대출 · 유정복 · 조원진 · 류성걸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8
2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미경 · 우원식 · 백재현 · 장하나 · 김경협 · 은수미 · 박남춘 · 한명숙 · 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0)(계속)	8
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0)(계속)	8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광진 · 김을동 · 정희수 · 강기운 · 박인숙 · 이상일 · 조현룡 · 李宰榮 · 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8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홍영표 · 박민수 · 이원욱 · 김제남 · 박원석 · 서기호 · 윤후덕 · 김성주 · 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8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유승희 · 추미애 · 이낙연 · 이미경 · 윤호중 · 송호창 · 민홍철 · 김현 · 홍영표 · 진선미 · 강기정 · 최민희 · 부좌현 · 최동익 · 심상정 · 장하나 · 이채익 · 이해찬 · 문정림 · 은수미 의원 발의)(계속)	8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8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낙연 · 변재일 · 김춘진 · 김진표 · 김영록 · 김광진 · 정청래 · 배기운 · 이상직 · 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8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유승우 · 서용교 · 주영순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8
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유승우 · 서용교 · 주영순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8
4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주영순 · 최봉홍 · 유승우 · 권성동 · 황영철 · 이완영 · 서용교 · 박민식 · 김기선 · 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1)(계속)	8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신경민 · 홍영표 · 우원식 · 이미경 · 한정애 · 이학영 · 김성주 · 박홍근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9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서용교 · 이노근 · 문정림 · 이완영 · 이종훈 · 최봉홍 · 김용태 · 나성린 · 이만우 · 심재철 · 정우택 · 정희수 · 이강후 · 이명수 · 조명철 · 김정록 의원 발의)(계속)	9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	

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9)(계속)	9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4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9
4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유승우 · 서용교 · 주영순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9
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유승우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9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김무성 · 윤관석 · 이자스민 · 김광진 · 이만우 · 윤호중 · 주영순 · 이채익 · 김성태 · 이진복 · 이완영 · 이재오 · 김한표 · 류지영 · 최봉홍 · 유일호 · 이종훈 · 하태경 · 이한성 · 강석호 · 이에리사 · 김장실 의원 발의)(계속)	9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9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5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김세연 · 문정립 · 윤명희 · 정문헌 · 이재영 · 주영순 · 정희수 · 김을동 · 김동완 · 조원진 · 김태원 · 이운룡 의원 발의)(계속)	9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9
5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윤명희 · 김기선 · 서용교 · 나성린 · 주영순 · 박대동 · 남경필 · 민현주 · 전하진 · 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9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배기운 · 김우남 · 홍익표 · 이명수 · 이낙연 · 진성준 · 이상직 · 김태년 · 김태원 · 남인순 · 장하나 · 정성호 · 유기홍 · 윤관석 · 홍종학 · 안민석 · 김성곤 · 전정희 · 유대운 · 박남춘 · 전해철 · 이원욱 · 민홍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9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56.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최봉홍 · 김상민 · 주영순 · 이완영 · 이종훈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효 · 정갑윤 · 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9
5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계륜 · 강창일 · 은수미 · 장하나 · 최봉홍 · 김경협 · 한명숙 · 한정애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9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
5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배기운 · 김미희 · 민홍철 · 오병윤 · 김재연 · 이석기 · 이상규 · 최규성 · 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14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박성효 · 강기윤 · 이우현 · 서용교 · 김성태 · 최봉홍 · 이종훈 · 강은희 · 김상민 의원 발의)(계속)	14
6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4
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도종환 · 문병호 · 박남춘 · 배기운 · 백재현 · 서영교 · 신경민 · 우윤근 · 유대운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이학영 · 전병헌 · 전정희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4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이한성 · 권은희 · 손인춘 · 이학재 · 정의화 · 李宰榮 · 유승민 · 유재중 · 김상민 의원 발의)(계속)	15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김진표 · 신장용 · 조정식 · 임내현 · 김태년 · 백재현 · 윤후덕 · 이찬열 · 노영민 · 이용섭 · 정갑윤 · 노웅래 · 이만우 · 주호영 · 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5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5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李宰榮 · 손인춘 · 김정록 · 김현숙 · 박민식 · 김명연 · 강석훈 · 이현재 · 신의진 · 홍지만 · 윤영석 · 유승민 · 윤명희 · 이종훈 · 이에리사 · 신경림 · 류지영 · 안종범 의원 발의)(계속)	15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정문헌 · 여상규 · 정희수 · 이운룡 · 정갑윤 · 박창식 · 안효대 · 김상민 의원 발의)(계속)	15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15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남경필 · 김성태 · 이이재 · 윤영석 · 김상민 · 최봉홍 · 주영순 · 민현주 · 서용교 · 김경협 · 심상정 · 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15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은수미 · 장하나 · 배기운 · 안민석 · 추미애 · 이낙연 · 전정희 · 유성엽 · 이자스민 · 원혜영 · 김광진 · 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15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최봉홍 · 유기준 · 유승우 · 김성찬 · 이만우 · 김도읍 · 김무성 · 김상민 · 김성태 · 민현주 · 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15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윤명희 · 김장실 · 주영순 · 김태원 · 김한표 · 김성태 · 이운룡 · 서용교 · 이종훈 · 유승우 · 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15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8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강은희 · 박상은 · 손인춘 · 김정록 · 윤명희 · 주영순 · 김상민 · 민현주 · 이재균 · 신성범 · 송영근 · 박덕흠 · 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15
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8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o 축조심사 생략의 건	16
84.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중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여 의결한 다음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법률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성태 법안 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법률안 의결은 소관별로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십시오.

○최봉홍 위원 지난 18일 날 법안소위 때 특수

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골자로 제가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논의하다가 약간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그게 안 올라와 있는데 74번에서 79번까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안건 처리 시 같이 병합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뒤에 자료를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병합 심의하겠습니다. 79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 미안합니다.

방에 들어온 것으로 보니까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다 얘기를 들었고요. 이따 그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의논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유대운·홍종학·민홍철·양승조·강기윤·이상민·김제남·배기운·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채익·김영록·고희선·정희수·이철우·송영근·이만우·신의진·최봉홍·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영록·김춘진·노철래·박수현·김우남·이현재·김종태·윤재옥·이완구 의원 발의)(계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

발의)(신계륜·유승우·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서용교·주영순·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

원 대표발의)(신계륜·유승우·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서용교·주영순·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

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유승우·서용교·주영순·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낙연·유승우·서용교·김정록·박대동·이만우·정우택·박인숙·류지영·최봉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서영교·김춘진·김영록·배기운·진성준·윤관석·조정식·주승용·우윤근·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신성범·이장우·윤재옥·김장실·박대출·유정복·조원진·류성걸·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2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미경·우원식·백재현·장하나·김경협·은수미·박남춘·한명숙·최봉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0)(계속)
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0)(계속)
3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운·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홍영표·박민수·이원욱·김제남·박원석·서기호·윤후덕·김성주·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유승희·추미애·이낙연·이미경·윤호중·송호창·민홍철·김현·홍영표·진선미·강기정·최민희·부좌현·최동익·심상정·장하나·이채익·이해찬·문정림·은수미 의원 발의)(계속)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유승우·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서용교·주영순·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낙연·변재일·김춘진·김진표·김영록·김광진·정청래·배기운·이상직·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3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유승우·서용교·주영순·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3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유승우·서용교·주영순·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4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주영순·최봉홍·유승우·권성동·황영철·이완영·서용교·박민식·김기선·박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1)(계속)

- 4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신경민·홍영표·우원식·이미경·한정애·이학영·김성주·박홍근·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서용교·이노근·문정림·이완영·이종훈·최봉홍·김용태·나성린·이만우·심재철·정우택·정희수·이강후·이명수·조명철·김정록 의원 발의)(계속)
- 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9)(계속)
- 4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4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유승우·서용교·주영순·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 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유승우·서용교·주영순·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김무성·윤관석·이자스민·김광진·이만우·윤호중·주영순·이채익·김성태·이진복·이완영·이재오·김한표·류지영·최봉홍·유일호·이종훈·하태경·이한성·강석호·이애리사·김장실 의원 발의)(계속)
-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김세연·문정림·윤명희·정문현·이재영·주영순·정희수·김

을동·김동완·조원진·김태원·이운룡 의원 발의)(계속)

- 5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5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김우남·홍익표·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김태년·김태원·남인순·장하나·정성호·유기홍·윤관석·홍종학·안민석·김성곤·전정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민홍철·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김상민·주영순·이완영·이종훈·서용교·유승우·박성효·정갑윤·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5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신계륜·강창일·은수미·장하나·최봉홍·김경협·한명숙·한정애·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4시15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실 때 이런저런 이견이 나온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영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모두 57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영표** 법안심사소위원회 홍영표 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8일·19일 및 20일 환경부 차관, 기상청장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7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위에서 의결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5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퇴비·액비의 관리 강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제도의 도입,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등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 주영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토사를 유출시킴으로써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2건), 은수미 의원,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화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 이종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

용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 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제조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 김성태 의원, 이종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초과에서 누적초과로 변경,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던 악취 방지 필요조치 미이행자를 벌금 부과 대상으로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 한명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지정 등 야생동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생물보호원의 결격사유 및 법정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계륜 의원, 김성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은 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측기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려는 것에 대하여 재정운용원

칙에 위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신계륜**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심사하는 57건의 법률안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하여 충분히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법안 내용……

○**위원장 신계륜**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각 조항 심사하실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낙연 의원, 윤명희 의원, 한명숙 의원, 홍문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신계륜 의원과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21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주영순 의원, 김성곤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2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학재 의원, 홍영표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30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명수 의원, 강동원 의원, 한명숙 의원, 신계륜 의원, 박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37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김성태 의원(2건), 은수미 의원,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44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입니다.

서용교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0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4항까지입니다.

최봉홍 의원, 김성태 의원, 이종훈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5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은수미 위원 아니, 이것도 노동부……

○위원장 신계륜 제가 보니까 지금 환경부는 끝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노동부까지 같이 끝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환경부 먼저 끝내지요.

○김성태 위원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계륜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

○한명숙 위원 인사하고 보내지요.

○최봉홍 위원 인사하고 보내고 노동부 하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실까요?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5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그동안 법 적용 과정에서 미흡했던 제도들이 보완되고, 헌법 합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퇴비·액비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축산업계와 협의를 통해 불법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2회를 재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 수질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수질관리가 과학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을 4대강 전 수계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사고 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공공수역으로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갖추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책임자와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토양 정화의 공익 목적이 균형되게 조화를 이루는 토지정화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광고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환경보건법 개정으로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 용품에 대하여 환경부가 직접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이원화된 현행 어린이 용품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환경부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관님을 포함해서 환경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촉진과 관측기관의 기상측기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검정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관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검정 비율을 높여 기상관측자료의 질적 향상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제언과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는데요, 그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국정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니까 환경부 차관은 남아 주시고 환경부 나머지 장관 이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배기운·김미희·민홍철·오병윤·김재연·이석기·이상규·최규성·유은혜 의원 발의)(계속)

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성호·강기운·이우현·서용교·김성태·최봉홍·이종훈·강은희·김삼만 의원 발의)(계속)

6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유승우·이완영·강창일·오제세·주승용·최봉홍·서용교·주영순·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도종환·문병호·박남춘·배기운·백재현·서영교·신경민·우윤근·유대운·유승민·유승희·유은혜·이학영·전병헌·전정희·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이한성 · 권은희 · 손인춘 · 이학재 · 정의화 · 李宰榮 · 유승민 · 유재중 · 김상민 의원 발의)(계속)
-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 · 신장용 · 조정식 · 임내현 · 김태년 · 백재현 · 윤후덕 · 이찬열 · 노영민 · 이용섭 · 정갑윤 · 노웅래 · 이만우 · 주호영 · 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유승우 · 이완영 · 강창일 · 오제세 · 주승용 · 최봉홍 · 서용교 · 주영순 · 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 6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李宰榮 · 손인춘 · 김정록 · 김현숙 · 박민식 · 김명연 · 강석훈 · 이현재 · 신의진 · 홍지만 · 윤영석 · 유승민 · 윤명희 · 이종훈 · 이에리사 · 신경림 · 류지영 · 안종범 의원 발의)(계속)
-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주영순 · 정문현 · 여상규 · 정희수 · 이운룡 · 정갑윤 · 박창식 · 안효대 · 김상민 의원 발의)(계속)
-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남경필 · 김성태 · 이이재 · 윤영석 · 김상민 · 최봉홍 · 주영순 · 민현주 · 서용교 · 김경협 · 심상정 · 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7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은수미 · 장하나 · 배기운 · 안민석 · 추미애 · 이낙연 · 전정희 · 유성엽 · 이자스민 · 원혜영 · 김광진 · 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최봉홍 · 유기준 · 유승우 · 김성찬 · 이만우 · 김도읍 · 김무성 · 김상민 · 김성태 · 민현주 · 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박창식 · 윤명희 · 김장실 · 주영순 · 김태원 · 김한표 · 김성태 · 이운룡 · 서용교 · 이종훈 · 유승우 · 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 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 · 강은희 · 박상은 · 손인춘 · 김정록 · 윤명희 · 주영순 · 김상민 · 민현주 · 이재균 · 신성범 · 송영근 · 박덕흠 · 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 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48분)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모두 2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모두 2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8일과 19일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 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19건의 안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의원, 신계륜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에 건설기계사업자를 포함하며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완영 의원안과 정부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배부해 드린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진 의원, 김희국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며 벌금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봉홍 의원과 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별도의 해고사유 등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

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 이종훈 의원, 김우남 의원, 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압류를 금지하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한편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관계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용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54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는 26건의 법률안도 소위심사 과정에서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1항까지 김선동 의원,

이완영 의원,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6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여기 오늘 소위 심사결과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에 대해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제가 간청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정말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해 달라, 항상 명절에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농성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사전적으로 매우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지급보증제라는 사후적인 방법이 강구돼야만 이게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고법 대안에 반드시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해서 함께 대안에 포함돼서 임금지급보증제도가 이 법안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이 문제가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보증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넣는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인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우는 퇴직금을 주기 위한 기금 공제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가지고 체불임금을 주게 될 경우 정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지금도 구상권 행사를 할 경우 한 50% 정도밖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주기로 한 기금 자체가 상당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보증기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입장을 저는 좀 더 듣고

싶고요, 계속 건설근로자공제회도 보증기관에 넣어야 되는지.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구상권 문제였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될 경우 사실상 임금을 줘야 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이 두 가지 의견 때문에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의 가치하고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이고, 우리 건설근로자들 체불 관련해서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이고 또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제기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관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 법에서도 그렇고 또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 공제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보험자는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공제회가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물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같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상권 관련해서는 보험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가 보증기관이 될 경우에는 구상권 관련해서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계의 보호조치들이나 강구조치들을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마는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추후적인 조치들을 함께 해 나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봉홍 위원** 제가 장관에게 몇 가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최봉홍 위원!

○**최봉홍 위원** 건설공제조합이 현재는 공제조합이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체불 임금을 체불 근로자들이 원청을 찾아가 가지고 하도 분탕질을 치는 바람에 원청회사들이 부도에 대비해 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체불 임금을 청산하자, 또 도망은 가 버렸고 돈은 원청에서 자꾸 물게 되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져 가지고 나중에 기금이 되니까 노동조합 근로자들도 욕심을 내서 혼련할 수 있는 비용을 내 달라, 그다음에 퇴직금까지 하자, 이래서 공제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붙어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건설부에서 노동부로 넘어왔어요. 노동부로 넘어오면서 고용관계가 들어가니까 공제조합 형태를 갖춰 가지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업자들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나 하면 당초에 만들 때, 제가 처음 만들 때 거기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건설부 산하에서.

처음 만들 때는 체불 노임 청산하자 했는데 돈 키워 놓으니까 이것저것 다 붙여 가지고 보증의무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부탁……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건설업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단 건설인력……

○**최봉홍 위원** 지금 자기네들이 이겁니다. 그 돈은 먹고 도망가도 좋다, 이 기금과 돈을 주고 그 대신에 그 기업은 퇴출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하는 것이 A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B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하는데 그 문제는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들을 보면 그 기업이 퇴출됐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금방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페이퍼컴퍼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당업체, 이것을 도태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운영 과정에서 그

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종훈 위원!

○**이종훈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이것을 제일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법을 만들려면 법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이 없으면 그래도 만들고 좀 두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부작용,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지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는 않겠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 주고…… 보증기관을 두고 먼저 임금 체불된 것을 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는 게 임금지급보증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구상권은 100% 행사 못합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를 따면 전화로 몇몇 소위 말하는 십장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건설근로자들 모집해서 그냥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 한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무실 임대 잠깐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상권이 행사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먹튀를 했을 때 보증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어느 기관이 이것을 보증한답디까? 주위에서 어느 보증보험이건 어느 금융기관이건 이것을 보증한다고 손 든 데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그래도 할 만한 데가 공제조합인데, 공제조합은 이런 식으로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한 명이 먹튀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설회원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조합 자체가 위험해져요.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보증제도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나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금융회사가 이것을 부작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 위원회가 가서 이 제도를 설명을 하고 충분히 공감대 얻은 다음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페이퍼컴퍼니 또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를 근로자들이 보면 안다, 그것은 블랙리스트로 해

서 제외시켜 버린다, 결국 그 얘기는 멀쩡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잘못 있다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이것은 저의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그 자체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하겠다 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제 장관님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사양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아마 이것을 마련하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몇 개 조합하고 컨택을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종훈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실무 TF를 운영한 기관이 건설공제회, 그다음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이런 업체들하고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의사 타진을 해 본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공제조합은 해서는 안 되고요. 법이 설사 도입돼도 공제조합은 여기서 제외한다, 보증기관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최봉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페이지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보증기관이지만 레코드키핑(recordkeeping)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증 인슈어런스 컴퍼니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지금 현재 법에서 보증금 지급금액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월에 한 300만 원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보증수수료, 이것들의 할인율이 그런 여러 가지 보험사고에 대비해서 시장에 맞게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른 토론자 또 없습니까?

예,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었고, 한편으로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의 실효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더 이상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임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해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대책들을 검토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 주고 다음번 회기에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지금 토론을 해도 쉽게 쟁점을 줄이기가 어렵지요?

○**이완영 위원** 예, 홍영표 간사님 말씀 주셨고요. 아직도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제도 운영의 의구심에 대해서 노동부가 해소를 다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전체를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럴 필요 없지요, 그 부분만 따로……

○**이완영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난번 소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빠지면 위원회안으로 된다고 그랬나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대안.

○**이완영 위원** 대안이 아니라 위원회안으로 된다고 그랬지.

○**위원장대리 김성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이완영 위원** 아니, 대안으로 되면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이종훈 위원** 다시 재발의해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정부 입장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짧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만약에 임금지급보증제도 자체가 지금 확신이 없으시면 소위에서 합의가 된 대로, 지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만 해도 건설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올리고……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은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빼고라도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의원의 안을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법안은 폐기됩니다. 다

시 발의해야 되는 거고, 정부안하고 나머지 의원안을 처리하면 위원회 대안으로 되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안도 폐기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임금지급보증제도, 당초 제출한 정부안하고……

○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안하고 이완영 의원안이 폐기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완영 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노동부가?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최봉홍 위원!

○최봉홍 위원 법률안 대안에 보면 보증 문제만 빼놓고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문제만 유보를 시켜 놓고……

○위원장대리 김성태 유보가 안 되고 폐기입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그러면 다시 내야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정부에서 그 부분은 재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우리 이완영 위원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정부하고 이완영 위원이 다시 절충해서 의원입법으로 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1항까지 김선동 의원, 이완영 의원,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6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6항까지 김광진 의원, 김희국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6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하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의 있습니까?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이 법이 법안소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한 부분은 알고 있으나 저도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의문과 문제점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급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일부만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무대행은 단순히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등등의 신고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의 궁극중도 제대로 해소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보험의 수혜로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본질, 목적이 있는데 개인 세무사의 경우는 저는 자격시험 과정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세무사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더라도 이러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동자의 삶을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이런 보험사무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어느 정도로 담보해 줄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아직 마련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 세무사에게 그런 부족한 업무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나 대안이 납득할 만큼 주어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무리해서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나 만약에 제가 모르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좀 듣고 싶고요, 그런 게 아직 없다면 이 법의 통과를 미루는 것을 강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 민주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 처리 관련해서 개인 세무사를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른 결론은 개인 세무사들이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 특히 영세사업장, 우리나라에 약 150만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140만 개의 영세사업장은 5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약 영세사업자의 98%가 개인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이나 세무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 세무사는 지금 허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이미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개인 세무사들이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에 직접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수많은 행정처리를 팩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전자신고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세무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업무 때문에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사무 대행을 함으로써 별도의 보수를 받는다면 아마 노무사들의 직무영역에 대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모든 정부의 행정을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만 노무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이유 하나로 팩스로 수백만 장의 서류를 처리하는 원시적인 형태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2011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노무사들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를 현재까지 방치해 온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고용·산재보험 징수율의 확대 그리고 국민 편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무사협회나 노무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간접적으로 지난번부터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우리가 노무사들의 어떤 일거리를 지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세요.

○홍영표 위원 하나만 더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게 정말 공인노무사들의 역할과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도 앞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공인노무사들이 원래 이 제도를 만

들 때 했었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봤듯이 일부 노무법인에서 범죄행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제대로 노사업무를 하려고 하는 공인노무사들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놔두고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은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 편의나 현실을 봐서 이것을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사실은 거의 전원 일치로 합의를 해서 올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저 발언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측 의견부터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절충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태 새누리당 쪽에서 한 분도 발언 안 했네요.

최봉홍 위원 하세요.

○최봉홍 위원 원스톱 원칙에 의해서 소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양단체가 서로 떠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부터 로비활동 나서는 게 또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들은 법사위에 가 가지고 집어넣겠다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뤄 보면서 보니까 지금 노무사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동부 시행령에 의해서 3년의 기간이 있어야 그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세무사는 어제 법 통과된 것을 보면 개인 세무사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세무사도 자격 규제를 노동부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더 필요한 것이 원스톱서비스를 한다면 그 대신에 노무사가 세무사

가 하는 일 원천징수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그 문제도 기재위하고 처리를 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이왕 일하는 김에 돈 안 받는 거니까, 안 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까 발언 안 하신 은수미 위원님!

그리고 정부 측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2008년, 2009년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한국노동연구원 과제에 사실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세무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대행을 해 주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가 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보통 30인 이상 사업장만이 주로, 그러니까 노무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세무나 사회보험을 같이 대행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조사했었던 10인 미만 사업장은 죄다 세무사들이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개인 세무사들을 직접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세무사 업무의 약 30~40%가 사회보험 관련 사회보험 대행 업무를 그것도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냐 그랬더니 다른 세무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 당시, 제가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부가 좀 활용을 한다면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요.

작년, 2013년 KDI 두루누리사업 용역보고서에도 똑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 봤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다,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고용부의 홍보였습니다. 약 37%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34%가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은 제가

주로 지지한 목적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워낙 넓고 그 규모 역시 전체가 한 4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영세사업장이 사회보험 대행을 맡기고 있는 개인 세무사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최봉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서 일정하게 자격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저는 그런 취지로 정착이 된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저 반드시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장하나 위원님은 아까 했으니까……

○**장하나 위원**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짧게 마무리하세요.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이내로 하세요.

○**장하나 위원** 감정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좀 안 봐 주시기를 확실히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홍영표 간사님께서 말씀 도중에 노무사나 세무사 업계들 일자리 지켜 주기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취지가 없었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장 위원님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장하나 위원** 그런데 제 발언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상당히 모욕스러운 기분이 순간 들었습니다.

제 취지가 노무자들 일자리 지켜 주는 것이나, 노무사로부터 설명은 들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영표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홍영표 위원은 발언권도 안 줬는데 마음대로 마이크를 들고 그래요.

다음, 김경협 위원 발언하세요.

○**장하나 위원** 저기, 마무리하자면……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 발언하세요.

○**장하나 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이내에 하라 했는데 왜 또 길게 해요?

○**장하나 위원** 시계가 없어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하세요.

○**장하나 위원** 홍영표 간사님과 은수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디에도 보험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답변은 못 들었기 때문에, 물론 현재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소위에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업무를 보면 보험료 납부·신고 업무가 있고요,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처리를 하는 2개의 업무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앞부분의 보험료 납부·신고 업무에 대한 논의만 죽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바꾼다, 이것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다음 문제입니다.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업무, 이것을 취급하는 업무는 별로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근로자들의 자격취득과 자격상실 문제,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이거든요. 고용센터 최대 민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게.

피보험자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게 실제로 일선 고용센터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끊이지 않는 분야고요, 신변 위협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원경찰까지 배치해서 막아야 될 정도로 이게 아주 복잡한 업무다, 민원이 많은 업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자격취득 문제에 있어서 영업사원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용직근로자 이런 분들의 고용보험의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실제로 세무사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업무까지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격상실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노동법의 전문가 그래서 실직 사유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서 실업급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될 텐데 과연 이런 문제들까지를,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회계사들의 확대 요구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고 좀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간사!

○**홍영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경협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법인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어떤 업무 영역을 넓혀 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세무법인은 되는데 개인 세무사는 안 되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논의하자는 것은 이 문제가 2001년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난번에도 토론을 해서 또 연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토론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기준, 세무법인이 하는 만큼만 개인 세무사들한테도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이유를 대서 또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방하남 장관님, 정부 측 입장……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개인 세무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들,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오래됐다고 하지만 의견 수렴이 몇 가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김경협 위원 말씀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질을 한다

면 4월로 넘겨서 한 번 더 이것을 조정을 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이완영 위원 저도!

○위원장대리 김성태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 관례도 저는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축조심사를 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중시하면서 하십시오.

다만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각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은 오늘 회의록에 남기고 첨가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회법에 소관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완영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발언 듣고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소위 위원으로서 제가 그날은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고용부에서도 양 단체 간에, 그날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달라' 고용노동부가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용노동부, 한번 물어봅시다.

○한명숙 위원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 없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4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양 기관이 서로 싸우고 또 서로가 적이 되고, 국가공인 자격사들 단체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잘 조정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게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여러분들 이제……

○이완영 위원 아니,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정부, 답변하세요.

이제 논의는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는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세무사 관련해서 우려 사항들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그런 가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안을 수용한 것

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여기서 의논하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3항부터 66항까지 김광진 의원, 김희국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6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록에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회의록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오랜 국회의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 의결된 내용을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내용까지 바꾼다는 것은 관례를, 오랜 관행을 여러분들……

또 향후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하신 개인 의견은 충분히 오늘 위원회 전체 회의록에 여러분들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하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하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것 토론 끝내고, 토론제가 논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제가 토론하려고, 이 내용을 제 말을 기록에만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축조심의를 위해서, 국회법에 명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장하나 위원 국회법 얘기하시고 법안심사소위 얘기하시지만 이렇다면 전체회의의 취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전체회의는 의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이의 있냐고 물어보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원칙이 바뀌면 저는 어떻게 회의에 참여합니까? ‘얘기는 해라, 들어줄 테니’…… 그냥 가결해 버리시면 어떻게 회의에 참여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민주당 입장을 대표한 홍영표 간사께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도……

○**장하나 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위원장님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신계륜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 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양당 간사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 납득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는 회의 진행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존중해서 잘…… 제가 의사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70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0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하나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

앞으로는 발언시간 3분 이내로…… 시간 카운트하세요. 3분 이내로 마쳐 주세요.

○**김경협 위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과정평가형의 목적이, 취지가 뭐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여기서 질의응답은 하지 마세요.

○**김경협 위원** 이렇게 하는 개정 취지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시고 법안소위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다 논의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과정평가형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노동부의 대책이 있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대책이 그래요. ‘과정 선정 과정 종목별 평가단 구성, 교육훈련 실시 종목별 평가단 구성, 자격 부여,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4회 실시, 내부평가에 외부전문가 참여, 사후관리, 성과분석 모니터링, 성적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죽 나왔는데 이것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지요?

○**이완영 위원**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김경협 위원** 교육부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말이지요, 지금 계좌제 과정평가하는 데 이의제기가 6000건입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정평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이것 하려면 노동부 같은 조직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도 질 관리를 위해서 외부평가단들하고 전문가들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무가 느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작정 이렇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0조1항·2항·3항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표명하신 우려들을 다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김경협 위원** 그런데 수정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안을 제가 지금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우려했던 사안들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겁

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계좌제 과정평가 하는 데 이의제기가 6000건입니다, 6000건. 그것 자체도 지금 다 부실하고 객관성 문제, 공정성 문제 다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다가 자격제도까지 또 과정평가형으로 바꿔 놓으면 노동부가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이 얘데요. 이것 하시려면 노동부 같은 조직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김경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첫째로 합격기준 관리는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 종목을 선정할 때 협회들하고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협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행계획 이행 여부 같은 경우는 질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법을 만든 목적?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수요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험 시스템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험 방식을 바꿔야지요, 21세기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또 이렇게 해 놓으면 감당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렇게 하세요.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기능사 자격증이 5개인가, 6개인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직업이 목수입니다. 나무를 참 잘 다루고요, 공장에서도 오래 일했는데.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국비로 직업학교도 1년을 다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시험내용을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법 제정, 도입 목적을 제가 읽어봤어요. 검토보고서인데,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도 자격증 취득하려고 별도의 시간·비용이 필요하다,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당 직무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험내용과 교육과정을 손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면 과정을 이수했다고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을 줄 때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충분히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금 도입 목적은 좋지만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준다고 했을 때 정말 출석만 하고요, 그 수업에 가서 졸든 뭐 하든 몇 %…… 자격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아주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분별한 도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직업학교 같은 데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정말 내실이 없는 자격증을 마구 남발해서 결국에는 자격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용자격증을 받았지만 어느 미용실에 가서 어느 정도 일해야 이 사람의 자격이 인정되고 그 자격증 자체는 무의미해지는 일들이 정말 생겨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하시고 최봉홍 위원님……

○이종훈 위원 장관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황에 맞게 시험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시험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이 제도 도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능력에 꼭 필요해서 체크해야 될 지식이 A, B, C인데 시험은 어떠한 형태

의 시험이라도 B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학원도 B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A, B, C를 다 과정에 넣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의미가, 그런 경우에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때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이런 과정평가로 자격을 주는 그런 직종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끔 제가 넣었고요.

두 번째, 과정평가 하는 데 사람 많이 필요하고 시간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장관님.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차분차분 가장 이 과정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빛을 볼 수 있는 직종 한두 개부터 시작해서 좋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천천히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최봉홍 위원** 오늘 회의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축조심의를 안 하기로, 끝을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소위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고 토론은 중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통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기술자격법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게 여야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장시간 논의를 거친 법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저는 이의 제기가 아니고요, 이종훈 위원처럼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수석전문위원 때부터, 지난 정부부터 이것이야 있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부터 강력히 반대를 해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사 자격부터 하는 학원들이 전국에 굉장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수

형으로 해 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수급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때 현재 지금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게 얼마나 부족하고, 이것은 더 안 해 줘도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정이수형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학교에서, 특히 이것은 전문대학에서 교육부에 요구해 가지고 노동부가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전문대학의 의견을 지금 노동부가 그냥 관철해 주는 거예요, 이 법을 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된다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해서, 특히 전기·가스·소방 이쪽 자격사들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된, 장하나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질적 관리 없이 출석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지금 전문대학 다니는 학생들 모두 준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근무했을 때 과정이수형 자격증이라서 사고가 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후진형은 안 일어나야 된다……

장관님 유념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아까 이종훈 위원의 의견대로 전 직종에 다 반영해서 과정이수형 평가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직종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됐지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다음에 또……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제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즉 봤더니 과정 선정만 주로 논의가 됐고 과정이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려되는 면이, 이게 실질적으로 질적 관리나 나중에 자격제도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책을 찾아가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안들을 마련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의 좋은 의

건을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회의록에 기재만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69항……

○**한명숙 위원** 아니, 위원장은 어디 간 거야?

○**위원장대리 김성태**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김경협 위원** 완전히 독재야, 독재,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0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수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위원** 가결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2항 민현주 의원과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8항까지 김학용 의원, 이종훈 의원, 김우남 의원, 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9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관계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 진행에 다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본 안건은 특수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우선 산재보험이라도 적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산재보험에 대해 가지고 단체보험에서 자기네들만 적용 제외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조항인데, 지금 회람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의 비교입니다. 노동부에서 시행령으로 좀 넣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여건상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놨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 가지고 유보하지 말고 같이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법안소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 안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원래 이 안 말고도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최봉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만이라도 통과를 시켜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해서, 부탁을 저희가 한 셈이 됩니다.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심지어는 저희 민주당이 이런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더 많은 법안들을 추후에 논의한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주로 민간보험과의 관계 문제였는데, 어쨌든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너무 더디게 지금 진전되어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률이 1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적용 확대를 위한 이 정도의 적용 제외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발표해주셨지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최봉홍 위원께서 비교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산재보험과 민간단체보험을 동일한 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갖고 있는, 그리고 헌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민간단체보험을 드느냐 마느냐는 그러한 각종 기업의 특징이나 혹은 집단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논의도 충분히 돼서, 저는 당일 날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으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봉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안전한 요양,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반대를 해 온 사람이고, 특히 이 법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제기합니다.

과거에 제가 법안소위 할 때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으면서 법안 심의를 한 적들이 있는데, 특히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을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가 그날 수정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이런 대체적인 논란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어느 보험을 2개 들 거냐?’라는 판단이 아니에요. 이미 들고 있습니다, 100% 사업주 부담으로. 여기다가 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을 근로자 반, 사용자 반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제시한 수정안이 법에 들어가든 시행령에 들어가든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국정과제가 수행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음 회의 때, 소위안대로 오늘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후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이완영 위원께서

이 법 처리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잘 좀 형평성이 갖춰지면, 오늘 법안 처리는 지난번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한에 관련된 그때 논의를 오늘 포함시키든지 해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 노동부 얘기를 들어 봐요.

○홍영표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충분히 소위에서 토론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국정과제인데, 국정과제의 취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특수고용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가치가 있더라도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쨌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보호 강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관련해서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중에서 보호의 성격보다는, 보호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자 책임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우려 사항이나 선택 옵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은 일단 사회보험은 머스트(must)다, 먼저 가야 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보완재이지 대체재 성격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이번에 올라온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님!

○이종훈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홍영표 위원 아니아니, 올라온 안만 하겠다는……

○위원장대리 김성태 올라온 안에다가……

○이종훈 위원 아니아니, 최봉홍 의원님 안을 넣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봉홍 의원안도 포함시켰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수정……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봉홍 의원안도 포함시켰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의원안도 포함시켜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저도 최봉홍 의원님 안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법안을 냈는데 업무상 재해 확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해 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전 정부에서도 출퇴근 시 발생한 통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마련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고,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왔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1년이나, ‘올해 안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길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선진국 등의 업무상 재해 확대 노력 등에 맞춰서 조속히 출퇴근할 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답변을 잠깐 부탁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성태** 고용노동부장관님, 답변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1차 연구가 일단 끝났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논의했던 것들, 추계라든지 이런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제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2차 제도를 지금 심층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9항까지 김학용 의원, 이종훈 의원, 김우남 의원, 서용교 의원,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아니, 들어 보고 하라고. 가만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김학용 의원, 이종훈 의원, 김우남 의원, 서용교 의원,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법안소위의 결의, 결정된 대로 존중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이완영 위원** 맞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이완영 위원** 앞서……

마이크 넣어 주세요.

지금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소위 결정안대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기서 전부 찬성을 해야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 지금 제가 대안을…… 지금 노동부장관에게 답변도 안 들어 봤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그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수정안 제시한 것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강제 적용시키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이것은 소위 결정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결정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완영 위원** 아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좀……

○**이완영 위원** 아니, 수정안을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지금 안 든 사람을 2개 중에 하나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 이미 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산재보험 수준을 평가해 가지고 그 보상이 되면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전부 들어라 이런 뜻의 수정안인데 무조건 앞으로 들 사람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이 법에 담은 시행령에 담으면 무방할 거다……

발의자께서도 그날 소위에서도 얘기하셨던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장관님!

○**이종훈 위원** 아까 했어요.

○**이완영 위원** 언제?

○**이종훈 위원** 아까 했어.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홍영표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완영 위원** 아니, 내 질문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이종훈 위원** 했다고. 안 된다고 했다고.

○**홍영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짧게 하세요, 짧게.

○**홍영표 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사실 소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결론을 못 얻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보험의 일반 원칙과 보편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는 환노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아마 사회보험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 대다수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영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이 문제만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내리세요.

○**홍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회의에서는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표결이라는 게……

○**위원장대리 김성태** 오늘 환노위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 특히 소위 결정과 위원회 전체 운영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소위 의견을, 결정을 무시하고……

○**홍영표 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날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

○**위원장대리 김성태** 개별적인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79항까지 김학용 의원, 이종훈 의원, 김우남 의원, 서용교 의원,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0항, 조금 전의 내용보다 조금 조정했습니다. 대신에 의사일정 제8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달라진 게 뭐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전면적용에서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제한하는 게 지금 최봉홍 의원님……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봉홍 의원안이 들어왔습니다. 최봉홍 의원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가입할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 ‘전면적용’에서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로 이렇게 약간 조정했으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제한하는 내용에……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했으니까……

○**이완영 위원** 휴업 등이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 미비한 부분은 장관……

○**이완영 위원** 대답해 보세요. 예외조항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의원실과 이완영 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하셔서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한명숙 위원**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확하게 저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면부는 읽어 드리지 않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0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과 제82항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3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4.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28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의원실에 배부한 이후에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요구사항과 해임촉구 결의, 고발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2013년도 국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2월 24일 월요일 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안)은……

○**한명숙 위원** 지금 안 해요?

○**이종훈 위원** 아니, 이것만 먼저 채택한다고요. 결과보고서만 먼저 채택……

○**위원장대리 김성태** 결과보고서만 먼저 채택하고……

보고서(안)은 감사 실시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감사대상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소관별·부처별 건수는 환경부 275건, 고용노동부 233건, 기상청 43건 총 551건이며 이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면……

○**은수미 위원** 이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은 월요일 날 하시면 됩니다.

은수미 위원님은 나중에 하세요, 월요일 날.

○**은수미 위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빠진 게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월요일 날 더 하세요.

○**은수미 위원** 보고서 내용은 지금 해야 돼요.

○**홍영표 위원** 조치사항만 월요일 날 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세요.

○**은수미 위원** 136쪽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의 내용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국정감사 당시에 홈페이지 쪽에서도 증인이었나 어쨌든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쪼개기 현상,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의 점오시간제라든가 공공부분의 돌봄교사, 그러니까 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일자리 쪼개기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근거에 따라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일자리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및 내실화 부분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일자리 쪼개기 현상, 예를 들어 홈페이지의 점오시간제나 돌봄교사 등의 그런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이 정도의 내용은 첨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 내용은 간사인 저도 좀 더 세부적인 검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서, 좀 위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위임을 해 줘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제가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 내용을 바로 내가 검토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 내용도 월요일 날 의결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은 자료를 좀 만들고 해야 될 것……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월요일 날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국회 본회의 관계없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좋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그 내용……

○**이종훈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받으셔 가지고……

○**홍영표 위원** 의견을 다 받아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질의 형식으로 주시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훈 위원** 환경부차관님 기다리셨는데 보고서……

○**한명숙 위원** 여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니까 이쪽에다가 전달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그렇게 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은수미 위원님.

○**이종훈 위원** 위임을 해 주세요, 제 생각에……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잘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흥 간사님이 받아서……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개진된 그런 수정의견을 일부 내용이지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훈 위원** 노동부장관 인사말씀……

○**은수미 위원** 장하나 위원님 말씀……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렇지. 장하나 위원님 오늘 법안 수용 그거 잊어 버렸어.

(웃음소리)

○**은수미 위원** 위원장님, 장하나 위원님 손 드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짧게 하세요.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늘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실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34 페이지를 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비협조하는 행위를 근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냈고요. 맨 아래 ‘증감법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12조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자’고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12조에 대한 징계는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노동부의 장인 방하남 장관님을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을 하여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게 우리 증감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선례가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자료제출 거부가 사실상 상임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계륜 위원장님이 3차에 걸쳐서 노동부에 자료를 위원회에 내라고 하셨는데도 2월 14일 현재 노동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청장 녹음파일 관련 상황 보고도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무리한 고발조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유감이지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자처했다고밖에 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이 고발의 건을 월요일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하나 위원님이 제안한 노동부장관 고발의 건은 양당 간사 간에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특히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안 처리에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인사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 등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지금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특히 이틀간의 법안소위에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 등 6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틀간의 법안소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세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주신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 중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고 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하였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신기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은 부정수급 미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당금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자격취득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자격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게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을 퇴직공제 가입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휴업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고·최저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기준을 변경하여 산재보험 급여 하락을 예방하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금 부과 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미숙한 의사 진행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환노 위원님 전체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환경부차관님, 그리고 노동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옥
기	획	심	경	우
고	용	이	재	홍
노	동	권	영	순
직	업	나	영	돈
고	용	황	보	국
인	력	신	기	창
고	령	이	수	영
근	로	임	무	송
노	사	박	화	진
공	공	송	문	현
산	재	박	중	길
기	상			
청	장	고	윤	화
차	장	조	주	영
기	획	김	영	신
관	측	박	관	영
기	반			
관	장			

○출석 위원(12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신 계 루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중 훈	장 하 나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장 위원(1인)

심 상 정

○청가 위원(2인)

서 용 교 주 영 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차	관	정	연	만
기	획	이	재	현
환	경	백	규	석
환	경	이	윤	섭
환	경	나	정	균
기	후	최	홍	진
물	환	오	종	극
상	하	김	상	배
자	연	남	광	희
자	원	홍	정	기

고용노동부